1995. 12.

光州廣域市西區保健診療所設置및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査 報 告

總 務 社 會 委 員 會

光州廣域市西區保健診療所設置및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審　査　報　告

1995年 12月

總務社會委員會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5年 12月 18日

나. 提 出 者 : 光州廣域市 西區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5年 12月 18日

라. 上程日字 : 1995年 12月 22日

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5年 12月 22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保健所長　白 洛 株)

가. 提案 事由

○『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』중　보건진료원의　자격(안 제4조 2항)에 관한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○ 보건진료원의 자격(제4조 2항)

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직무교육을 종전 24주이내에서 24주이상으로 개정하기 위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朴 鍾 根)

○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을 상위법에 맞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"24주 이상" 이수한자중 위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심사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論 要旨 : 생 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 음

8. 其他 事項 : 없 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24주이내”를 “24주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보건진료원) ①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. ②보건진료원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이 하	제4조(보건진료원) ①----------. ②---------- 24주 이상의 ----------. 여 백